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9. 25.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8년 9월 17일

나. 발 의 자 : 김기중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08년 9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9월 23일)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 설명자 : 김기중 의원)

가. 제 정 이 유

○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의 조성(안 제7조)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안 제8조)
- 기본적인 문화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복지의 실현(안 제9조)
-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안 제10조)
-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안 제11조)
-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안 제12조)
-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구축 지원(안 제13조)

○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자문단은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과 문화시책·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시책 및 문화관광시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관련계획에 대한 평가, 문화관련 시책의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우리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내지 제3조 우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5조 내지 제6조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 · 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민은 영등포구의 문화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내지 제13조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

거환경의 조성,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시책의 교류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시책의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 등을 정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의 안 번 호	164

발의년월일 : 2008년 9월 17일
발 의 자 : 김 기 중 의원

1. 제정이유

○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함(안제2조 내지 제3조)

○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안제5조)

○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의 조성(안제7조)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안제8조)
- 기본적인 문화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안제9조)
-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안제10조)
-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안제11조)
-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안제12조)
-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 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안제13조)

○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제14조 내지 제15조)

○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자문단은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과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정책 및 문화관광정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계획에 대한 평가, 문화관련 시책의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제16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　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여 구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도시 인프라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문화관광의 창출
6. 더불어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

②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책(이하 “문화도시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역할) 구민은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문화시설과 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조성·개발·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협력을 유도하며,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인력·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관광의 개발)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 문화적 도시환경, 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인프라를 지역의 홍보와 관광에 연계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 ①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동체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구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교류의 확대) ①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 관련정보의 교류와 문화도시 시책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시설, 문화예술인, 문화활동 후원기업이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문화도시 시책의 추진체계

제14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구민의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단은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2. 문화·예술·관광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영등포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
4.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시책의 연구 및 개발
5.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6.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보급 등 홍보
7.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8.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발굴

⑤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자문단의 지원 등)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